

윤 리 강 령

2021. 3. 2

디아이지에어가스 주식회사

윤리강령

디아이지에어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전, 진실성, 고객가치, 협력, 도전을 핵심가치로 삼아 고객, 구성원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및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마련한다.

1. 고객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3. 임직원의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4.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5.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1조(고객의견 존중과 신뢰형성)

- 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
- ③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유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조(고객만족 및 봉사)

- ① 고객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제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제3조(고객에 대한 자세)

- ①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 있게 응대한다.
- ② 회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
- ③ 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임직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4조(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

- ① 주주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경제성이 있는 보답을 위하여 전문적인 책임경영을 한다.
- ②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으로 경영한다.
- ③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 제안, 불편 및 공식적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

제5조(투명한 경영)

- ①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 ② 주주와 투자자에 대하여 법이나 경쟁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3장 회사와 임직원의 자세

제1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조(임직원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환경 조성,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경영활동 및 목적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및 회사 전반의 업무개선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7조(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 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업무 수행 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배려한다.

제8조(안전관리)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9조(자기계발 지원)

- 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
- ②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계발하여 경력을 쌓아가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노사간 상호 신뢰와 화합)

- ① 노사 상호간에 법규를 준수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적 노사 관계를 마련한다.
- ② 회사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핵심가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의 공감)

- ① 임직원은 회사의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공감하고 이를 업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 ② 임직원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명감 및 솔선수범)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과 소속 부서 및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② 임직원은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제13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공·사 구분 등)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정보의 기밀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관련 정보는 기밀로 철저히 관리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안전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정치참여 금지)

- ① 임직원은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②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3절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제18조(상호간 직장예절)

- ①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임직원들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의 기본예의를 지키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임직원 상호간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제19조(상호간 금품 등 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사이의 금품, 향응제공, 편의의 수수와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20조(성희롱 금지)

- ① 임직원 상호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언행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21조(평등한 기회 부여)

- ①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 한다.

제22조(공정한 거래)

- ①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회사에게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협력회사와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거래 행위는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윤리경영에 대한 전파 및 홍보)

회사의 윤리경영을 협력회사에 전파·홍보하여 협력회사가 회사의 윤리경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5장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

제24조(사회적 책임)

- ① 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 기업으로 유지 .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② 제반 법규 및 사업 영위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제25조(사회공헌활동)

- ① 기업이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문화적 .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②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제26조(환경 보전)

- ① 사업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전적 .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제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한다.

제27조(조세의무)

- ① 회사는 고의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 . 보관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과세 가능한 모든 항목을 나열하고 과세용으로 신고한다.

제28조(법규 준수)

- ①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② 국제협약, 부패방지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보칙)

- ① 회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우려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함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신고사항을 최고 법무책임자에게 처리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윤리강령 행동규범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 1. 이 윤리강령은 2016년 9 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하의 윤리강령은 정관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내규에 우선한다.
- 2. 이 윤리강령은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